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5
----------	-----

2024. 6. 1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30. 강을석 의원 등 10명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0.)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강을석 의원)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법제처 정비지원팀-37호, 2023.2.16.)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과의 불일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2024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만 나이 통일법’ (「민법」¹⁾과 「행정기본법」²⁾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말함)에 나이의 계산 기준 및 표시 방법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강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임.

나. 개정내용

- 기존의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로 나뉜 채 혼용되어서 사회적·행정적 혼선 뿐만 아니라 분쟁과 갈등도 발생해왔음.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나이의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규정하였음. 법 시행 이후부터는 나이를 출생일에 0세로 세기 시작하여 첫 번째 생일이 되는 날에 나이를 더하여 1세로 세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1) 「민법」(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 「행정기본법」(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 안 제2조(정의)제1호 중 ‘만 19세’ 를 ‘19세’ 로 개정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만’ 이라는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적용함.

다.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³⁾를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연령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도 반영하여 나이 적용과 관련된 구민의 혼선 및 불편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집행기관 소관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2023년 6월 이미 대부분의 조례들을 대상으로 개정이 완료⁴⁾되었으나 구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는 정비대상 목록에서 누락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의원입법을 통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3) “만 나이 정착을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법제처 정비지원팀-37호, 2023.2.16.)

4)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023. 6. 1. 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5
----------	-----

발의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강을석·한윤수·복진경·
윤석민·황영각·전인수·
이호귀·이향숙·손민기·
김형대 의원(이상10인)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법제처 정비지원팀-37호, 2023.2.16.)에 따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내용과의 불일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u>19세</u> ----- -----.</p> <p>2. (현행과 같음)</p>